



서정대학교
SEOJEONG UNIVERSITY

사회복지상담과 특강-사회복지시설 창업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와 장기요양기관 설립하기

김수영[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강사소개: 김수영

- 現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 現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비전임교원
- 現 굿케어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 現 굿케어재가복지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학 박사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

2 장기요양기관 이해

3 장기요양기관 설립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

고령사회 구분

-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 14% 미만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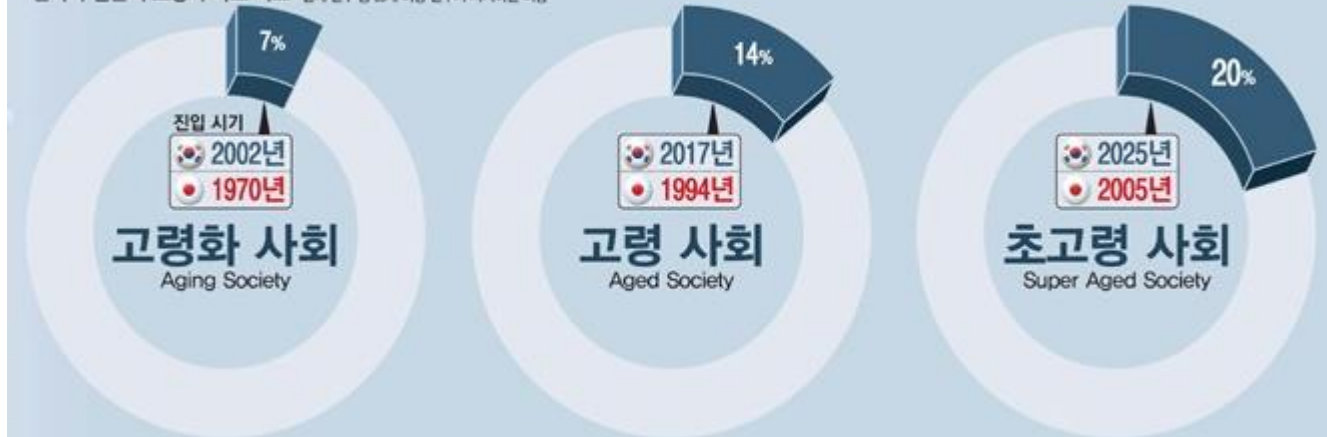
- 고령 사회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이상 20% 미만인 국가

- 초고령 사회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속도 비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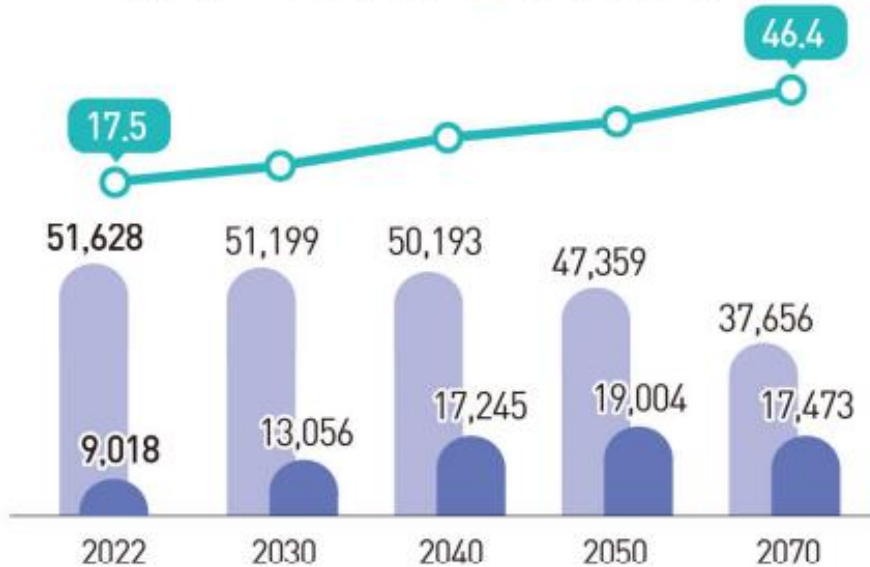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

고령인구(65세 이상)

(단위: 천명, %)

고령인구 및 비중

● 총 인구 ● 65세 이상 ○ 65세이상 인구 비중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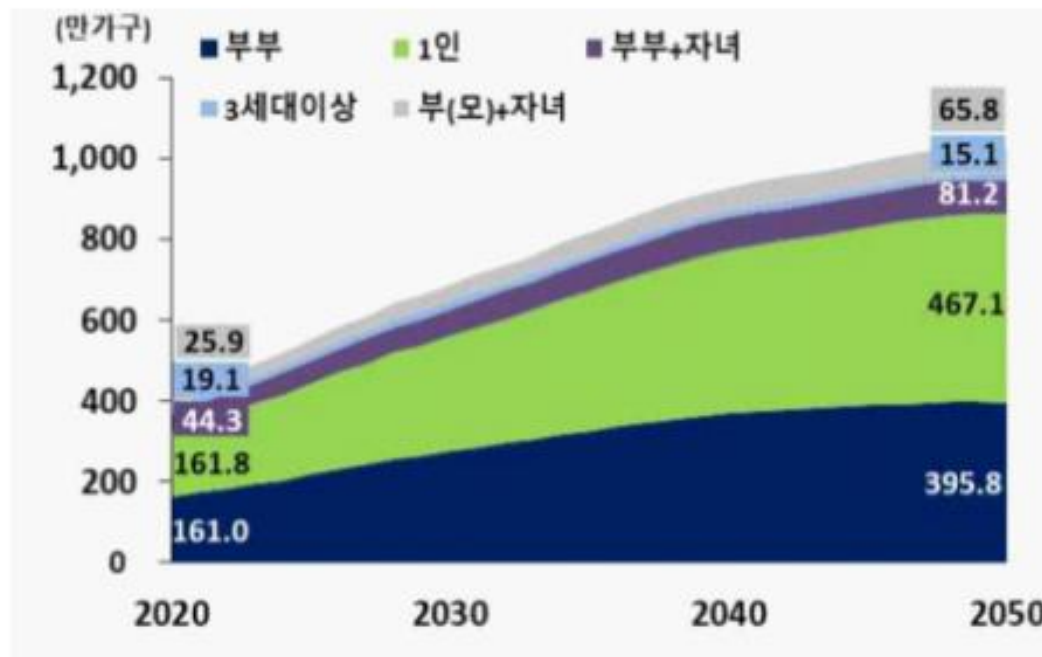
■ 65~69세 ■ 70~74세 ■ 75세이상



통계청 2022. 09.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부부가구는 34.7%이고, 1인 가구는 34.9%에 이른다(통계청, 2022).



[65세이상 가구유형별 가구 규모, 2020~205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

부모 부양 책임자 인식 변화 추이

통계청의 2002~2018년 사회조사 분석 결과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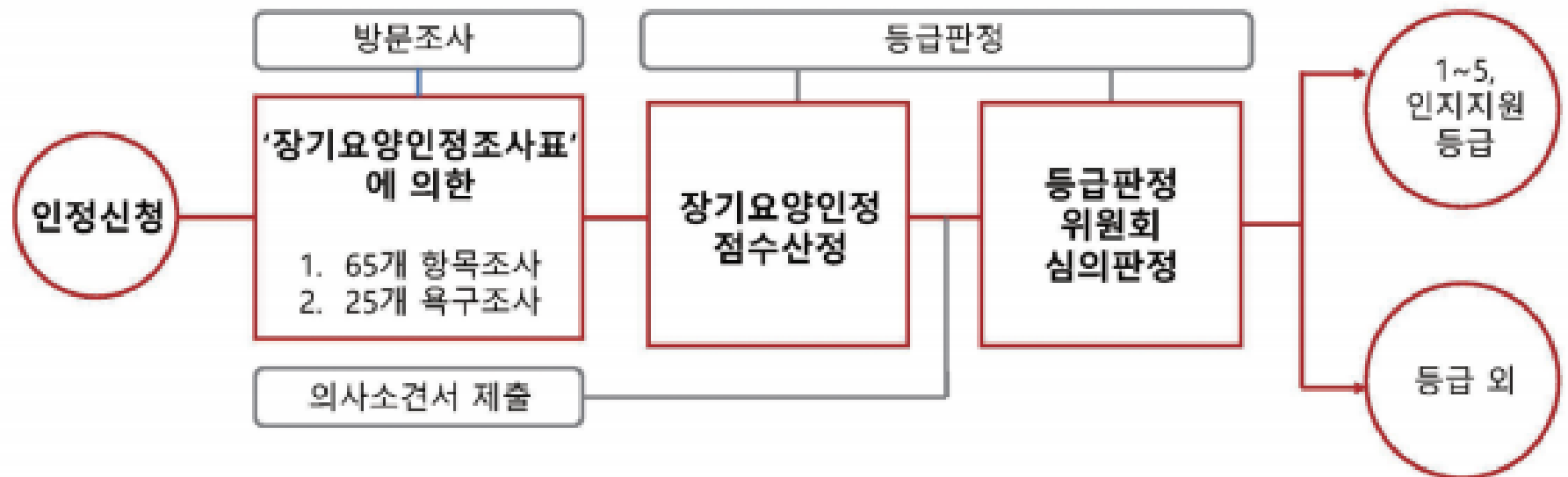
- 1)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
- 2) 국민연금보험: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
- 3)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
- 4)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
- 5)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인정서/이용계획서/복지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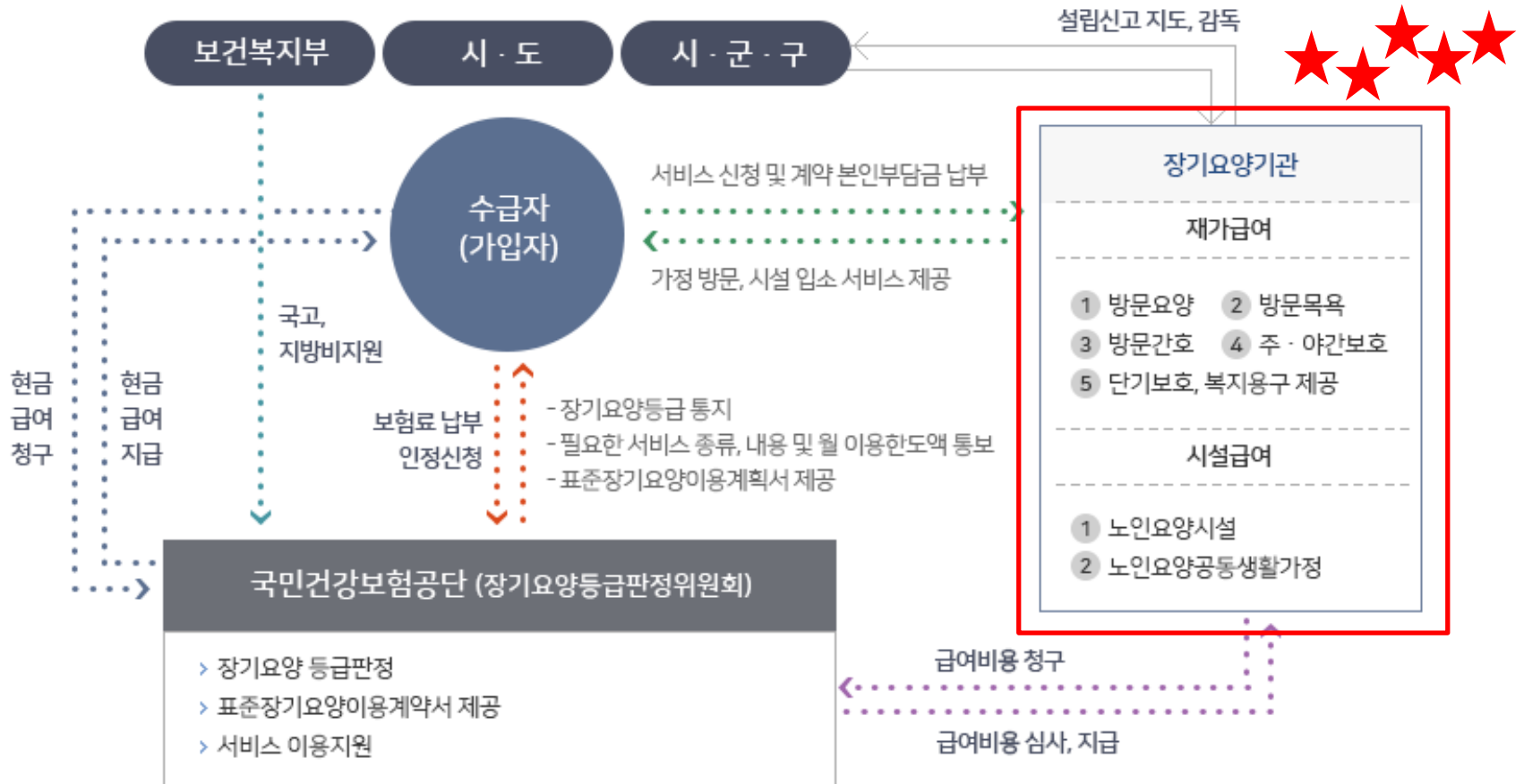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12. 31.>

발급번호 :		발행일자 :	
장기요양인정서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관리지사		전화 번호	
주소		홈 이址	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수급자 안내사항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이용계획서(본안)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에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등급			만장유효기간			
재가급여(필 한도액)			1개월당 원					재가 %	
노인 요양 시설 치매전달실 가형			1일당 원						
치매전달실 나형			1일당 원					시설 %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일반			1일당 원						
치매전달형			1일당 원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 사 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비용 기준일 : 0000-00-00)									
급여종류		횟 수		의		의		의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공구									
☎ 000-0000-0000		지사			담당자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illegible]

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2

장기요양기관 이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가정 등에서 서비스 이용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 이용

특별현금급여



- 1~2등급의 경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 가능
-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재가급여)

재가급여의 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복지용구(재가급여)

	구입품목(10종)	구입품	구입품
품목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시설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본인 일부부담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①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②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준다.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요양기관 설립하기



재가 서비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신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지정신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신고접수·지정



장기요양기관



재가 서비스

설치신고 확인증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공통 (일반)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1-2.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1-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1-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재가 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공동 (일반)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1-2.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1-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1-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시설 및 인력 기준-방문요양

가. 방문요양

1)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구 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0	0

2) 인력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명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

- 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
-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 지원서비스 포함)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라)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9조, 별표 2 등 참조)
- 마)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 가능

시설 및 인력 기준-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1) 시설기준

구 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작업) 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이용자 10인 이상	0	0	0	0	0	0	0	0	0
이용자 10인 미만	0	0	0	0	0	0	0	0	0

2) 인력기준

구 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인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의 경우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1명
이용자 10인 미만	1명	-	1명 이상			-	1명	-

* 0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0(0명당 1명 배치기준)'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시설 및 인력 기준-주야간보호

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

나) 모든 종사자는 대표자(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함

다)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함

라)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마)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음.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각각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장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중 하나만 택하여 겸직할 수 있음

바)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사)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함

자)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차)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법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카)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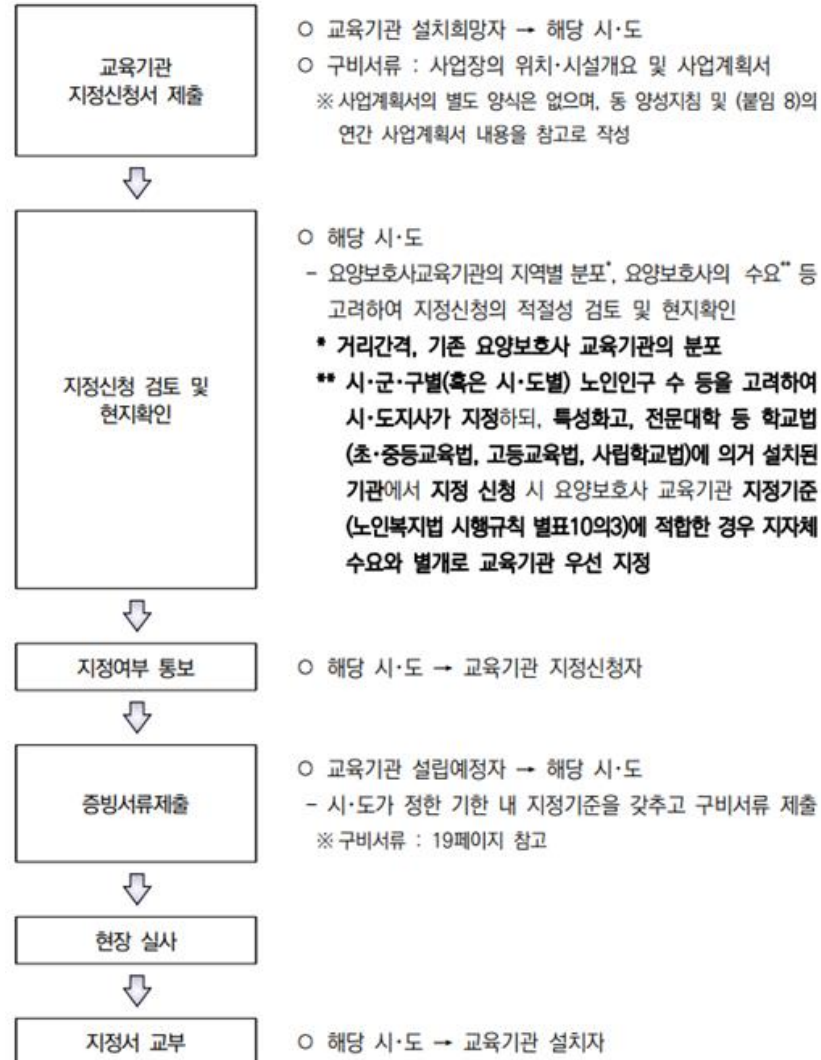
* <예시> 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 20인)을 노인요양시설(입소자 30인)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에 따라 증가된 급식인원을 고려하여 조리원 2인(입소자 25명당 조리원 1명)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야간보호시설은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은 조리원을 각각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을 공동으로 1명만 배치하고 상호 겸직하도록 할 수 있음

* <예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소속 조리원이 주야간보호시설의 식사를 조리하거나,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등 공동 활용이 가능 (공동활용하는 조리원 간 근무 계획을 자유롭게 짤 수 있으며, 근무계획에 따라 주야간보호대상자가 없는 일요일에도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 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것이 가능)

파)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의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2조)

요양보호사교육원-설립절차



요양보호사교육원-설립절차

● 시설기준

강의실·사무실	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가. 전용강의실 {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나.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3. 사무실 :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집기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함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 시설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광역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능

※ 강의실은 수강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어야 하며, 수강생의 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독립 공간 필요

※ 강의실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운영하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 요양보호사(수강생 포함) 직무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함

※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요양보호사교육원-설립절차

● 직원배치기준

구분		수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없음
교수 요원	전임	1명 이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래	1명 이상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3) 교수요원 자격기준 중 ④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5년 재직경력 중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 교육내용별 교수요원 기준 : 붙임 4

※ 위 표 ①의 사회복지학과 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요양보호사교육원-설립절차

※ 교수요원 자격기준 각 항의 업무경력의 범위

1. **(②항관련)**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2. **(③항관련)**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 1번과 2번의 사회복지분야 업무경력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장애인복지 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제외)에서의 경력만 인정함
3. **(②항관련)** 전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인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한 강의경력 포함
4. **(④항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의 업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도 포함
*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은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물리치료 등 포함)분야 업무 경력에 한해 인정



문의) 김수영

010-7511-1401

97gazet@gmail.com

תודה
Dankie Gracias
Спасибо شكراً
Merci Takk
Köszönjük Terima kasih
Grazie Dziękujemy Děkojame
Ďakujeme Vielen Dank Paldies
Kiitos Tänname teid 谢谢
Thank You Tak
感謝您 Obrigado Teşekkür Ederiz
Σας Ευχαριστούμ 감사합니다
ขอบคุณ
Bedankt Děkuje vám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Tack